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규정집 규정

[2024년 2월 28일 개정]

목 차

01.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규약	1
02. 가맹단체 운영 규정	17
03. 가맹 및 탈퇴 규정	31
04. 관리단체 운영 규정	39
05. 지회 운영 규정	45
06.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53
07. 상벌위원회 운영 규정	59
08. 생활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67
09. 전문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73
10. 학교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79
11. 선수위원회 운영 규정	83
12. 위원회 등 실비변상 규정	89
13. 체육유공자 포상금 지급 규정	93
14. 우수선수 훈련비 지급 규정	99

15. 대회개최 · 참가 보조금 지원 규정	109
16. 인사 규정	119
17. 복무 규정	143
18. 보수 규정	169
19. 회계 규정	197
20. 물품관리 규정	217
21. 여비 규정	237
22. 문서관리 규정	245
23.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255
24.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293
25. 차량운영 관리 규정	327
26. 실업팀 운영 규정	347
27. 기부금품 관리 규정	365

학교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학교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15. 01. 19.

개정 2022. 12. 1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이하‘장애인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각종위원회로 학교체육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3.>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체육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학생체육의 운영 및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3. 특수학교(급)의 체육활동 및 현황에 관한 사항
4. 장애청소년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생체육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장애청소년 장학금 대상자 심의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생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애인체육회 이사 또는 당해 분야 전문가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장애인체육회 관련사업 직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장애인체육회 정기이사회까지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장애인체육회 이사 중에서 위촉된 위원이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직도 자동으로 해촉된다.

제5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장애인체육회의 요청 또는 위원 과반수이상이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은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본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애인체육회 관계직원 또는 해당부문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각 위원과 초청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체육회 임·직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사무처리)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장애인체육회 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제9조(긴급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규약에 준한다.

부 칙(2015. 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